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 세액환급 신청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

제출일 : 20 년 월 일

본인은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 수령시 원천징수 세액 중 실제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액의 반환을 청구하오니 아래의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안내 사항

제출서류	1.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2. 통장 사본 (공제거래 계좌가 아닌 경우만)
주의사항	1.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 수령 후 5년내에 제출한 경우만 소득공제받지 않은 금액에 대한 세액 환급 2. 계약자 본인의 개인 계좌로만 수령 가능

○ 반환 요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반환금 수령계좌

거래은행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공동이용의 목적(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사무) :	노란우산(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의 업무처리에 수반되는 사무(세액환급 등)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3. 이용기관의 명칭 :	중소기업중앙회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의 동의를 얻어 중소기업중앙회가 조회한 행정정보를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수탁업체(금융기관, 상담사, 콜센터 등)에게 업무처리를 위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